

충남대학교 학칙

[시행 2020. 9. 8] [충남대학교학칙 제1970호, 2020. 9. 8, 일부개정]



충남대학교 0428215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충남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창의·개발·봉사 정신이 풍부한 인격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 목표로 하며, 각 대학원의 교육 목표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조직

제1절 총장·부총장

제3조(총장)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2. 8. 8>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 직선제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8. 8, 개정 2019. 8. 6>

제3조의2(부총장·대학원장) 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둔다. <개정 2012. 2. 27, 2016. 6. 1, 2020. 5. 14>

② 교학부총장은 교무처, 학생처, 입학본부, 국제교류본부, 안전관리본부 및 기초교양교육원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연구산학부총장은 기획처, 연구처, 정보화본부 및 지역협력본부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대학원장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제외) 및 특수대학원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 2. 27, 2013. 2. 22, 2014. 1. 15, 2015. 6. 30, 2016. 6. 1, 2020. 5. 14, 2020. 9. 8>

③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대학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2. 27, 2014. 1. 15>

제2절 교육 조직

제4조(단과대학) 본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과대학 및 직할학부(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2. 23, 2014. 2. 17, 2014. 3. 31, 2018. 2. 28>

1. 인문대학
2. 사회과학대학
3. 자연과학대학
4. 경상대학
5. 공과대학
6. 농업생명과학대학

7. 삭제 <2018. 2. 28>
8. 약학대학
9. 의과대학
10. 생활과학대학
11. 예술대학
12. 수의과대학
13. 사범대학
14. 간호대학
15.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6. 자유전공학부
17. 국가안보융합학부

제5조(일반대학원 등) 본교에 그 주된 교육 목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12. 6, 2009. 2. 23, 2010. 2. 26, 2013. 2. 22, 2014. 2. 17>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 가. 법학전문대학원
 - 나. 의학전문대학원
 - 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라.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 마. 신약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가. 경영대학원
 - 나. 교육대학원
 - 다. 행정대학원
 - 라. 보건대학원
 - 마. 산업대학원
 - 바. 특허법무대학원
 - 사. 평화안보대학원
 - 아. 국가정책대학원

제6조(학부, 학과·전공) ① 대학, 대학원에 별표 2의 학부, 학과·전공을 둔다.

② 대학, 대학원, 학부, 학과에 장을, 전공에 전공주임교수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09. 7. 1>

③ 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부와 학과의 장 및 전공주임교수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 대학의 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5., 2016. 6. 1>

④삭제 <2016. 6. 1>

제6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운영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와 산업교육특별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에서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정원,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및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학생의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7. 28, 2019. 8. 6>

- 제7조(전임교수 등)** ① 전임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8조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각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 및 전문대학원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대학원, 부속시설 등에 전임교수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2009. 7. 1, 2012. 8. 8, 2019. 9. 10>
-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임교수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2. 23>
- ③ 전임교수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중점적으로 전담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8>
- ④ 전임교수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27>
- ⑤ 전임교수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교수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⑥ 전임교수 외에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석좌교수, 명예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 기금교원, 외래강사, 박사후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9. 9. 10>
- ⑦ 전임교수, 제6항의 각종 교수요원 및 조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7. 1, 2011. 12. 28>

제7조의2(강사)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시간단위로 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른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강사의 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10]

제3절 교수회

제8조(교수회) ① 본교에 전임교수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단과대학·전문대학원 교수회) ① 단과대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과대학·전문대학원 교수회를 둔다. <개정 2009. 2. 23>

② 단과대학·전문대학원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대학원교수회의 심의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1. 교수, 연구 및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발의
3. 학과(부) 및 학부 전공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4. 입학, 수료 및 졸업, 전과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장학, 후생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단과대학·전문대학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단과대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필요한 경우 학과(부) 교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전교 교수회) ① 본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교 교수회를 둔다.

② 전교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3. 기타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필요한 경우 전교 교수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절 대학평의위원회

제11조(대학평의위원회) ① 본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절 부속시설 등

제12조(부속시설 등) ① 본교에 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이하 "부속시설 등"이라 한다)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6. 20, 2009. 2. 23, 2014. 4. 11>

② 부속시설 등에는 각각의 장을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장은 관련 대학, 전문대학원, 학과 및 학부의 장으로, 인재개발원장은 학생처장이 국제언어교육원장은 국제교류본부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정보화본부장, 지역협력본부장, 안전관리본부장, 정부재정지원사업총괄추진단장,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총장실장, 정책연구단장, 도서관장, 창업지원단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입시전문위원실장은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하며, 부속시설 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0, 2009. 2. 23, 2009. 7. 1, 2012. 2. 27, 2013. 2. 22, 2013. 11. 25, 2014. 8. 28, 2015. 6. 30, 2016. 6. 1, 2016. 11. 1, 2017. 6. 12, 2019. 8. 6, 2020. 2. 26, 2020. 5. 14, 2020. 9. 8>

③ 정부재정지원사업총괄추진단장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관하여 총장의 명을 받아 관계 사업단·팀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14. 8. 28>

④ 총장실에 비서팀을, 입학본부에 입학과와 입시전문위원실을, 국제교류본부에 국제교류과·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와, 아시아권 국제교류협력센터를, 정보화본부에 정보화기반팀과 정보화지원팀을, 지역협력본부에 지역협력팀을, 총장실에 비서팀을, 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과와 학술정보운영과를 두며, 각 과(팀) 및 원(실)별 사무분장표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09. 2. 23, 개정 2009. 7. 1, 2010. 2. 26, 2011. 5. 31, 2012. 2. 27, 2013. 12. 30, 2014. 4. 11, 2014. 8. 28, 2014. 12. 16, 2016. 6. 1, 2017. 11. 20, 2020. 2. 26, 2020. 5. 14, 2020. 9. 8>

⑤ 제4항에 규정된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으로,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9. 2. 23, 개정 2014. 8. 28, 2020. 5. 14>

⑥ 연구시설과 부속시설(교육기본시설 중 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매 3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시설 및 공통 부속시설의 운영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7. 1, 2014. 8. 28, 2016. 6. 1>

⑦「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두며,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2. 23, 2014. 8. 28>

⑧「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에 별표 4와 같이 학교기업을 두며, 이의 운영과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8. 28, 2019. 9. 10>

⑨ 부속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6. 20, 2014. 8. 28>

제12조의2(도서관) ①「대학도서관진흥법」및「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본시설인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 이용, 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서 배치기준,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1]

제6절 행정조직 및 학무회의

제13조(행정조직) ① 총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연구처 및 사무국을 두며, 각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0. 9. 8>

② 교무처에 교무과와 학사지원과 및 교육혁신센터를, 학생처에 학생과를, 기획처에 기획평가과와 대외협력팀, 정보분석센터 및 사회공헌센터를, 연구처에 연구지원과, 산학협력팀, 연구기획팀 및 산학협력중개센터를, 사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및 시설과를 두며, 각 과별 분장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8. 21, 2009. 2. 23, 2011. 2. 22, 2012. 2. 27, 2016. 6. 1, 2020. 5. 14, 2020. 9. 8>

③ 대학(원)에 별표 6과 같이 행정실을 두고, 분장 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2. 23, 2009. 9. 14>

④ 삭제 <2009. 2. 23>

⑤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본부장이 겸보하되, 이의 임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5. 14, 2020. 5. 14>

⑥ 제2항에 규정된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9. 2. 23>

⑦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행정조직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 개정 2009. 2. 23>

제14조(학무회의) ① 본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학무회의를 둔다.

② 학무회의는 총장, 교학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대학원장, 일반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각 대학장(직할학부장 제외), 각 처장, 사무국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정보화본부장, 지역협력본부장, 정부재정지원사업총괄추진단장,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기초교양교육원장, 도서관장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2. 23, 2009. 7. 1, 2012. 2. 27, 2012. 6. 26, 2013. 2. 22, 2014. 3. 31, 2014. 8. 28, 2015. 9. 11, 2016. 3. 25, 2016. 6. 1, 2016. 11. 1, 2017. 6. 12, 2020. 2. 26, 2020. 5. 14, 2020. 9. 8>

③ 학무회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교직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학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6. 20>

1. 대학, 대학원, 학과, 학부, 전공 및 부속시설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학칙과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학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무회의 의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⑦ 학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절 위원회

제15조(대외협력추진위원회) ① 본교 발전의 대외협력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외협력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② 대외협력추진위원회는 기획처장, 연구처장, 국제교류본부장과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37인 이내의 학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개정 2012. 2. 27, 2012. 8. 8, 2014. 5. 26, 2014. 8. 28, 2020. 9. 8>

1. 대외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및 동문 협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외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대외협력추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2. 27>

제15조의2(대학윤리위원회) ① 본교 교직원의 공직윤리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대학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윤리위원회는 교무처장, 사무국장과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대학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7]

제16조(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법」 제5조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7>

② 인사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일반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의학전문대학원장, 대학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11인 이내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하고, 교학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은 여성 전임교수로 한다. <개정 2012. 2. 27, 2012. 4. 13>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2. 27>

제17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원 교수회가 대학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② 대학원위원회는 당해 대학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대학원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4. 연구 과정 및 공개강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대학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교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9]

제17조의3(대학원장위원회) 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 대학원간에 협의 또는 조정해야 할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장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장위원회는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제외) 및 특수대학원장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0. 9. 8>

③ 대학원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간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학원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2. 22]

제17조의4(재정위원회) 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7조의5(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도서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연구산학부총장·대학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 및 도서관장·도서관 분관장(이하 "분관장"이라 한다.), 학술정보지원과장과 각 대학(원)별로 총장이 임명하는 20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산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0. 2. 26, 2020. 5. 14>

③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1]

제18조(기타위원회) 대학 및 대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7. 1>

제3장 대학·대학원 학사일반

제1절 학생정원 및 학위과정

제19조(학생정원 등) ① 대학 및 대학원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학위과정)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위과정을 두며, 일반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는 일반과정, 학과간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을 둔다. <개정 2009. 2. 23, 2010. 2. 26, 2011. 12. 28, 2014. 2. 17, 2017. 2. 28, 2017. 2. 28>

1. 학사학위과정: 각 대학
2. 석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각 특수대학원
3. 전문석사학위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4. 박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5. 전문박사학위과정: 법학전문대학원

② 일반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및 신약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통합한 과정(이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라 하되,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의 통합과정은 "복합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3., 2010. 2. 26., 2014. 2. 17.>

③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분석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5. 31, 2014. 2. 17>

제21조의2(학위과정의 통합) ① 「고등교육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1. 27]

제22조(학위종류 및 종별) ①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학사, 석사, 전문석사, 박사, 전문박사 및 명예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9. 2. 23, 2011. 12. 28>

② 학위종별은 별표 10과 같다.

③ 명예박사학위의 학위종별은 박사학위의 학위종별에 따른다. 다만, 일반대학원에 전공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학문 분야의 학위종별은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2절 입학과 등록

제23조(입학절차 및 시기) ①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본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학사관리 및 수학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할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입학허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9. 14, 2011. 3. 15>

②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③ 입학 시기는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의2(입학취소) ① 입학이 허가된 자가 본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 입학을 금지한다.

③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1. 30]

제24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1. 3. 15>

② 학생은 매 학기에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7. 1>

제3절 수업

제25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다만, 학사운영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학기 및 동기 방학기간 중에 계절학기 및 특별학기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제26조(수업일수)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은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제27조(수업시간표) 매 학기 수업시간표는 개강 전에 대학(원)에서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수업방법)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및 이동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2018. 5. 16>

제29조(휴업 및 방학) ① 정기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하고 학기 및 동기 방학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7. 1>

-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비상재해 등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절 시험과 성적

- 제30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학업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교과목 담당교수(비전임교원을 포함한다)가 정한다. <개정 2009. 2. 23, 2009. 7. 1>
 ② 학생은 수강하여야 할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 수강하지 아니하면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급제점 이상의 성적평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8. 28, 2015. 4. 14>
 ③ 교과목별로 당해 학기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자가 군 입대휴학과 임신·출산·육아를 위하여 휴학(이하 "육아휴학"이라 한다)한 경우, 창업을 위하여 휴학(이하 "창업휴학"이라 한다)한 경우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시험개시일 이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2. 12. 20, 2013. 7. 30, 2014. 8. 28, 2015. 4. 14>
- 제31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결상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학업성적은 각 대학원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대학은 Do급 이상을, 대학원은 Co이상을 급제점으로 한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 과정은 Do이상을 급제점으로 한다. <개정 2009. 2. 23, 2011. 5. 17>

등 급	실 점	평 점	등 급	실 점	평 점
A+	95 ~ 100	4.5	C+	75 ~ 79	2.5
Ao	90 ~ 94	4.0	Co	70 ~ 74	2.0
B+	85 ~ 89	3.5	D+	65 ~ 69	1.5
Bo	80 ~ 84	3.0	Do	60 ~ 64	1.0
			F	60점 미만	

- ③ 성적의 평점평균과 등급은 각 대학원의 성적평점평균과 등급에 관하여 각 대학원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다만, 대학원의 평점평균이 1.75미만의 성적에 대한 등급은 D로 한다. <신설 2009. 9. 14>

등 급	평점 평균	등 급	평점 평균
A+	4.25이상	C0	1.75이상 ~ 2.25미만
A0	3.75이상 ~ 4.25미만	D+	1.25이상 ~ 1.75미만
B+	3.25이상 ~ 3.75미만	D0	0.75이상 ~ 1.25미만
B0	2.75이상 ~ 3.25미만	F	0.75미만
C+	2.25이상 ~ 2.75미만		

- ④ 제3항의 성적평점평균은 이수한 교과목별 학점수에 제2항에서 정한 등급별 평점을 곱하여 합산한 후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09. 9. 14>
 ⑤ 대학(원)의 성적평점평균에 대한 실점(백분율점수)환산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 9. 14>

제5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32조(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예과는 2년,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 약학대학은 6년(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은 2년으로,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2. 23, 2011. 5. 31, 2013. 2. 22, 2017. 2. 28>

② 약학대학에서의 전공교육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되, 학년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한다. <신설 2013. 2. 22>

③ 졸업소요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 중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4.0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 5. 31, 2013. 2. 22>

④ 학·석사연계과정자로서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 중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3.75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1. 5. 31, 개정 2013. 2. 22>

⑤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재·편입학자는 수업 잔여연한으로 한다)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 10. 7, 2013. 2. 22>

⑥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전과 이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개정 2013. 2. 22>

⑦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2>

제33조(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2. 7, 2009. 2. 23, 2009. 7. 1, 2009. 12. 7, 2010. 2. 26, 2011. 5. 31, 2012. 11. 27, 2013. 2. 22, 2014. 2. 17, 2015. 1. 19, 2015. 6. 30, 2016. 2. 19, 2017. 2. 28, 2017. 11. 20., 2020. 2. 26>

1. 일반대학원

가. 석사학위과정 2년

나. 박사학위과정 2년

2. 전문대학원

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3년, 전문박사학위과정 2년

나.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과정 4년

다. 삭제 <2010. 2. 26>

라. 삭제 <2010. 2. 26>

마.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바.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사.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아.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자. 신약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2년

차. 신약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2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하는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2년 6월, 단, 교원 특별연수(교육파견)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2년

나. 행정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다. 산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라. 평화안보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마. 국가정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바. 특허법무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4. 석·박사학위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가.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이미 수학한 석사학위과정을 포함하여 4년

나.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7년(각각 전문석사학위과정(제1, 2학년), 학술박사학위과정(제3, 4, 5학년), 전문 석사학위과정(제6, 7학년)을 순서대로 이수하여야 함

- ② 학·석사연계과정은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5. 6. 30>
- ③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5. 6. 30>
- ④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6. 30>
- ⑤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과 전문박사학위과정은 각각 5년, 의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 및 복합학위과정은 수업연한의 1.5배로 한다. <개정 2009. 2. 23, 2011. 5. 17, 2011. 12. 28, 2015. 6. 30>
- ⑥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30>

제34조(장애인 학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절 휴·복학, 제적, 자퇴 <개정 2009. 7. 1>

제35조(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2014. 8. 28>

② 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대학은 6개 학기를, 대학원은 4개 학기(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9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통산하여 2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후기(8월말)에 수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를 휴학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 2012. 12. 20, 2013. 7. 30, 2020. 5. 14>

1.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2.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 복무기간
3. 육아휴학 기간
4. 창업휴학 기간
5.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6.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④ 대학(원)생의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하고, 육아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8세(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이하,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창업 후 3년 내에,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0, 개정 2013. 7. 30, 2016. 8. 16>

제36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 복무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제35조 제3항에 의한 휴학기간 중이라도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할 수 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제3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 된다. <개정 2007. 12. 6, 2009. 2. 23, 2009. 7. 1, 2011. 3. 15, 2011. 5. 17, 2013. 2. 22, 2019. 8. 6, 2019. 9. 10, 2020. 9. 8>

1.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 한 자
2.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아니 한 자
4.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본교 이외의 다른 학교의 학적을 가진 자
5. 삭제 <2013. 2. 22>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7.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
8.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통산 2회 유급되거나 연속하여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
9.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 이 경우 학년 유급자는 2개 학기를 유급한 것으로 산정한다.
10. 대학의 경우에는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기간 중 휴학이 있을 경우에도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졸업(수료)학점을 충족한 학생 및 졸업(수료) 최종학기 학생은 제적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불허한다.
11. 제10호에 의하여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이 경우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8조(자퇴)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제7절 등록금 및 장학

제39조(등록금) ① 재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5>

- ② 등록금은 정해진 연액을 2개 학기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5>
- ③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제2항의 등록금과 함께 징수하거나 또는 그 때마다 따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5>
- ④ 유급자는 유급된 학기 또는 학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5, 2019. 9. 10>
- 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과 시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3. 15>

제40조(휴·복학자의 등록금) ① 납입기한 이전에 휴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15>

- ② 복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5>
- ③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2분의 1선 경과 전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유효하다. <개정 2009. 2. 23, 2011. 3. 15>
-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자(당해 학기의 성적을 취득한 휴학자는 제외한다)의 등록금은 유효하다. <신설 2009. 2. 23, 개정 2011. 3. 15>

제41조(결석자 등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15>

제42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1. 3. 15, 2020. 9. 8>
 1.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아니 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등록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1. 3. 15>

제43조(등록금 감면) 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외국 학교와의 복수학위 과정에 재학하는 자 및 기타 법령에 납입금 감면대상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2011. 3. 15>

② 등록금 감면의 범위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3. 15>

제44조(신청 학점 수에 의한 등록금)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시간제 등록생과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학생의 등록금은 모집단위별 학기당 등록금을 기준으로 당해 학기 신청한 학점 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3. 15>

제45조(장학금 지급)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절 정원 외 학생 및 공개강좌

제46조(정원의 학생) 제19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원의 학생의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공개강좌) ① 「고등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대학 학사운영

제1절 입학(재·편입학 포함)자격 및 입학전형

제48조(입학자격) ①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약학대학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약학대학은 3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신설 2011. 2. 22, 개정 2013. 2. 22>

제49조(재·편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총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입학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여석여부와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6, 2009. 7. 1>

② 편입학은 정원 내 편입학과 정원 외 편입학으로 구분한다.

③ 정원 내 일반편입학은 다른 학교에서 제2학년 이상 수료한 자, 전문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당해 학년도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는 경우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2009. 7. 1, 2011. 2. 22, 2013. 2. 22, 2014. 12. 16>

④ 정원 외 편입학은 학사편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편입학,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학생 편입학 및 특성화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산업체 재직자 편입학 등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 7. 1, 2011. 2. 22, 2012. 12. 20, 2014. 12. 16>

⑤ 편입학 학년은 제3학년(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제1학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편입학 학년은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6>

⑥ 재·편입학생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2. 16>

제50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한다.

② 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지역의 범위 및 모집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 12. 16, 2019. 9. 10>

지역의 범위	모집 비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0% 이상

③ 입학전형시행계획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4. 12. 16>

④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2. 16>

제50조의2(대학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31]

제2절 전공(학과)배정 및 전과

제51조(소속전공의 배정) ①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둔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의 학과 또는 전공의 배정은 2개 학기를 이수한 때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정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과 또는 전공의 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전과)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2학년이상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하 “전과”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른 학과에서 옮겨오는 전입과 다른 학과로 옮겨가는 전출로 구분한다. <개정 2009. 7. 1, 2012. 12. 20, 2013. 5. 24, 2017. 11. 20>

②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이수한 교과목의 평균평점이 2.5점 이상이고 학칙 제59조제5항에서 정한 직전 학년의 수료인정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3. 5. 24>

③ 제2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2년 미만인 학과(전공), 제3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3년 미만인 학과(전공), 제4학년 전과자는 신설된 지 4년 미만인 학과(전공)에 전입할 수 없다. <신설 2013. 5. 24, 개정 2017. 11. 20>

④ 전출은 해당학년의 학과(전공)별 배정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전입 인원은 해당학과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 5. 24>

⑤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전과허가 시기는 매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5. 24>

⑥ 편입학한 자에게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4>

⑦ 대학 또는 모집단위(학과, 전공 포함)가 통합, 개편, 폐지로 인하여 입학 당시와 다르게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단서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과를 허용하며, 제5항의 전과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 2012. 12. 20, 2013. 5. 24>

⑧ 전과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5. 24>

제3절 교육과정

제53조(교육과정의 구분)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12. 6, 2009. 7. 1, 2015. 2. 16.>

②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은 학기당 15시간(평가시험시간을 포함)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체육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1학점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음악분야의 전공실기 교과목과 수업일수를 단축하였거나 휴업하였을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③ 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의 실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체, 학교기관 및 학교기업 등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사회체험활동의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이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7. 1>

[제목개정 2016. 2. 16]

제54조(영역별 소요학점 및 이수학점) ① 교양 과정의 졸업소요학점 배점기준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직설치학과와 교직이수자 및 사범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자유전공학부 리더십과 조직과학전공(야간과정)은 36학점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2009. 7. 1, 2011. 2. 22, 2015. 2. 16>

② 교양과정은 인문·사회·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제목개정 2016. 2. 16]

제54조의2(기초과정) 삭제 <2015. 2. 16>

제55조(전공과목) 전공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은 당해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의 100분의 6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7. 1>

제56조(융복합창의전공) ① 학생은 자신의 주전공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1, 2016. 2. 19, 2017. 2. 28>

1. 복수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2. 연계전공 :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3. 자기설계전공 :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하는 전공
4. 산학융복합전공 : 2이상의 학과(부)가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5. 부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각 39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 2015. 2. 16, 2016. 2. 19>

③ 제1항 제5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하며, 주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54학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 2. 19>

④ 제1항 각 호 전공의 이수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7. 1, 항 변경 2016. 2. 19>

제57조(부전공) 삭제 <2016. 2. 19>

제58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학위과정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복수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7. 1, 2012. 2. 27>

제58조의2(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7]

제4절 졸업 및 수료학점

제59조(졸업 및 수료 소요학점) ① 대학의 졸업소요학점은 130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별도로 한다. <개정 2009. 7. 1, 2009. 9. 14, 2011. 2. 22, 2011. 3. 15, 2011. 5. 31, 2011. 12. 28, 2013. 5. 24, 2014. 2. 28, 2017. 2. 28>

대학명	학점	관련 학과(전공)
사범대학	140	국어교육과, 체육교육과, 교육학과
	142	수학교육과
	150	영어교육과, 건설공학교육과, 기계금속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
간호대학	140	간호학과
공과대학	166	건축학 전공(5년제)
약학대학	160	약학부
	168	약학과, 제약학과
의과대학	164	의학과
수의과대학	160	수의학과

② 의예과 및 수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생은 이수한 전체 교과목(복수전공·부전공을 포함한다)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의예과는 2.0)이상이고, 따로 정하는 미래설계 상담제 관련 교과목, 인문학 관련 교양 교과목,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2009. 7. 1, 2017. 2. 28, 2019. 9. 10>

④ 공학교육심화과정 등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전공)의 학생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 및 별도의 인증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7, 2009. 9. 14, 2012. 8. 8, 2012. 11. 27, 2017. 6. 12>

⑤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약학대학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준용한다. <개정 2009. 7. 1, 2011. 2. 22, 2013. 2. 22, 2013. 5. 24, 2017. 2. 28>

수료학년 졸업소요 학점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
130학점	33학점	65학점	98학점	130학점	
140학점	35학점	70학점	105학점	140학점	
142학점	36학점	71학점	107학점	142학점	
150학점	37학점	75학점	112학점	150학점	
160학점 (162.5)	40학점 (41학점)	80학점 (82학점)	120학점 (122학점)	160학점 (162.5학점)	
164학점	41학점	82학점	123학점	164학점	
166학점	33학점	66학점	99학점	132학점	166학점
168학점	42학점	84학점	126학점	168학점	
의(수의)예과	36학점	72학점			

⑥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절 학점 이수 및 인정

제60조(이수학점의 범위) ① 학생이 매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7. 1>

② 계절학기 및 특별학기 이수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이수학점은 제1항의 학기별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1>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학점이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사학을 이수한 경우는 8학점 이내
2.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20학점 이내
3.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체험활동을 한 경우는 36학점 이내
4.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한 경우는 2학점 이내
5. 삭제 <2012. 11. 27>
6. 삭제 <2017. 6. 12>

④ 제3항의 학점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이미 이수한 과목도 재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이미 이수하거나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 또는 과오 등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제61조(학점의 인정) ① 제3절의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9. 7. 1, 2012. 12. 28, 2015. 4. 14>

1.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과정을 이수 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한 경우(개정 2012. 12. 28)
 3. 입학 후 「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4. 삭제 <2012. 12. 28>
 5. 국내·외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동등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 재학 중 대학과목을 선이수한 경우. 다만, 학점인정은 이수 후 5년 이내로 입학학년도에 한한다. <개정 2009. 7. 1>
 6.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고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국가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 ② 제1항 중 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 범위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18학점 범위에서 인정한다. <개정 2009. 7. 1, 2012. 12. 28, 2014. 6. 25, 2015. 4. 14>

제62조(재입학자의 학점) 재입학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제63조(편입학자의 학점) 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한 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편입당시 당해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여 인정한다.

②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한 자에 대한 제2학년까지의 수료학점은 당해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3, 4학년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당해 학과(부)의 교육과정표에 따라 제3, 4학년에 배정된 교과목 중에서 영역별 이수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6, 2009. 7. 1>

③ 국가고시 또는 자격취득 등을 위하여 학과(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 2학년에 배정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의 이수로 본다.

④ 정원의 외국인 편입학자의 학점 사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되 학년 판정은 제59조를 따른다. <신설 2012. 12. 20>

제64조(전과한 자의 학점) 전과한 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당해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9. 7. 1>

제65조(학점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성적경고) ① 매 학기 성적평균평점(대학원 수강신청 학점은 제외)이 1.75(의예과는 2.0)에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성적 경고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2. 22, 2019. 9. 10>

1. 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과학과 학생
 2. 제1학기및제2학기(이하 "정기학기"라 한다)재학 중 각각 6학점 이하 수강신청자(국내·외대학 교류자 포함)
 3. 정기학기 이외 수강신청자
 4. 휴학 중 국외대학 교류자
- ②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신청 학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7조(유급) ① 의과대학 의학과와 유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0>

1. 학년 유급: 학년말 성적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학생
 2. 학기 유급: 당해 학기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 낙제(F)한 학생
- ②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각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2.0미만인 경우에는 학년말에 유급시키고, 당해학기 전공 필수과목 중 1과목 이상에서 낙제(F)한 경우 학기말에 유급시킨다. <신설 2014. 2. 17, 2019. 8. 6>
- ③ 유급자는 유급된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23, 개정, 2009. 7. 1, 2014. 2. 17>

제6절 졸업논문 및 학위수여

제68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실험·실습·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을 포함한다)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20>

-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당해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졸업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 ④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거나 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수료한 학기말부터 2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한 수료자라 하더라도 학과(전공) 교수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7. 28, 2017. 11. 20>
- ⑤ 졸업논문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9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별표 10에서 정한 당해 학사학위(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에게는 영문학위증(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2012. 12. 20>

- ② 학위는 학년말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 ③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별로 각각 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시기는 각 전공을 모두 이수한 때로 한다.
- ④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2. 16>

제70조(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2015. 4. 14, 2017. 2. 28>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대학졸업학력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은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본교에서 8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본교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전공학점 4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한 자
- ② 제1항에서 인정하는 본교의 취득학점에는 본교 정규과정, 시간제등록,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을 통산한다. <신설 2017. 2. 28>
- ③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 2. 28>
- ④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양식의 학위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수여한다. <신설 2017. 2. 28>
- ⑤ 기타 학점은행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생교육원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2. 28>

제70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①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제69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학기를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② 제1항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또는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에게 학사학위취득(추가)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학사학위취득(추가)유예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6.>

[본조신설 2009. 7. 1]

제71조(졸업의 취소) 졸업생으로서 제60조제6항에 따른 이수학점 취소로 인하여 졸업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개정 2009. 7. 1>

제7절 시간제 등록생

제72조(시간제 등록생) ① 제48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본교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별로 본교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이하 "통합반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이하 "별도반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9. 2. 23>

④ 통합반 시간제 등록생(별도반 시간제 등록생 포함)은 당해 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으로 하며,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2. 23, 개정 2012. 2. 27>

⑤ 별도반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현장실습수업 및 주말 등을 통한 집중학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시수는 1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23>

⑥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2. 23, 개정 2015. 6. 30>

제73조(시간제 등록생의 학점 신청 등) ① 시간제 등록생이 매 학기 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매 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2. 23>

② 시간제 등록생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이 이수한 교과목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제74조(시간제 등록생의 학위수여) ① 시간제 등록생이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이고, 당해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때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논문을 심사에서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등의 상담을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1절 입학(재입학 포함)자격 및 입학전형

제75조(입학자격) 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3>

1.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9. 2. 23>
- ③ 대학원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본교 해당 대학원의 동일 계열 전공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15학점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로 한다. 다만, 수료 예정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09. 2. 23, 2016. 2. 19, 2017. 11. 20>
- ④ 교육대학원의 공통사회교육전공, 공통과학교육전공은 현직 교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 ⑤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8>
 1. 국내외 대학의 법학전문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2.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법학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세부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을 쌓아 수학능력을 갖춘 것으로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4. 위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한국어능력이 우수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76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입학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 ② 재입학자가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을 재 사정한다.
- ③ 재입학자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따로 정한다.

제76조의2(편입학) ① 다른 법학전문대학원(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에 등록하였던 학생은 본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편입학하는 학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의 범위 안에서 본교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는 편입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09. 2. 23]

제77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한다.

-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지역의 범위 및 모집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28>

[본조신설 2014. 12. 16]

지역의 범위	모집 비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 이상

- ③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4. 12. 16>

제2절

제78조(전공의 변경) ① 학생의 전공 변경은 석·박사 학위과정의 과정별 소속 학과 내에서 가능하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변경 후의 전공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를 인정하고 해당하지 않는 교과목은 다른 전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5. 14, 2016. 6. 1>

② 전공의 변경 신청은 첫째학기 이수 후에 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4, 2009. 11. 14, 개정 2016. 6. 1>

③ 전공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8조의2(전과) ① 석·박사 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서 전과를 신청하는 자는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을 경유하여 전과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②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책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공 주임교수는 전과한 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 가운데 변경된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전과 시기는 학기 개시 전으로 한다. 다만, 계열학사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 중에도 시행할 수 있다.

⑤ 기타 전과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3절 교육과정

제79조(교육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79조의2(국내대학(원) 및 외국대학(원)과의 학위과정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대학(원) 및 외국대학(원)과 공동으로 복수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2. 17>

[본조신설 2012. 2. 27]

제4절 졸업 및 수료학점

제80조(대학원의 수료학점)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2. 7, 2009. 2. 23, 2009. 12. 7, 2010. 2. 26, 2011. 12. 28, 2012. 2. 27, 2012. 11. 27, 2013. 2. 22, 2014. 2. 17, 2015. 1. 19, 2016. 2. 19>

1. 일반대학원

가.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

나.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

2. 전문대학원

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92학점 이상

나.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

다.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과정 168학점 이상

라. 삭제 <2010. 2. 26>

마. 삭제 <2010. 2. 26>

바.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30학점 이상

사.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아.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 차. 신약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카. 신약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이상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는 과정별 수료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36학점 이상
 나. 교육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다. 행정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라. 산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마. 평화안보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바. 국가정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사. 특허법무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4. 석·박사학위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 가. 석·박사학위통합과정 60학점 이상
 나.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복합학위과정은 이미 이수한 석사 학위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195학점 이상
- ② 교과목별 성적 등급이 Co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한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 과정은 교과목별 성적등급이 Do이상인 경우에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9. 2. 23>
- ③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일반대학원은 별지 제7호 서식, 전문대학원은 별지 제12호 서식, 특수대학원은 별지 제18호 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 ④ 수료학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절 학점 이수 및 인정

제81조(다른 학교의 학점인정)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학교(본교의 다른 대학원 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수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7. 1>

제82조(학점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을 원칙으로 한다.

제83조(이수학점) 이수학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3조의2(성적경고 및 유급)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적경고 및 유급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5. 17>

②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는 각 학기에 배정된 전공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기말에 유급시키고,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2.0미만인 경우에는 학년말에 유급시킨다. <신설 2009. 2. 23>

③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유급자는 유급된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23>

제6절 졸업논문 및 학위수여

제84조(졸업논문) 대학원 졸업논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5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별로 정한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별표 10에 의한 해당 학위를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국문학위기와 영문학위기 모두를 수여한다. <개정 2009. 2. 23, 2014. 1. 15, 2014. 12. 5>

구 분	학 위	서 식
일반대학원	석사	별지 제8호[국문 서식]
		별지 제9호[영문 서식]
	박사	별지 제10호[국문 서식]
		별지 제11호[영문 서식]
전문대학원	석사	별지 제13호[국문 서식(이학석사 등)]
		별지 제14호[국문 서식(의무석사 등)]
		별지 제15호[영문 서식]
	박사	별지 제16호[국문 서식]
		별지 제17호[영문 서식]
특수대학원	석사	별지 제19호[국문 서식]
		별지 제20호[영문 서식]
타대학과 공동학위	석사	별지 제22호 또는 제22호의2[국문서식]
		별지 제23호[영문 서식]

② 학위는 학년말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85조의2(수료자의 등록 등) 총장의 승인을 받은 수료자 중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수료자 등록을 한 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7. 28>

제86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① 학술, 문화, 사회에 지대한 공헌 또는 공적이 있거나 대학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② 명예박사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7조(학위수여 취소) 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②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학생활동 및 지도

제88조(교칙준수) 학생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제89조(공결) ①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결을 허가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7. 1>
② 공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7. 1>

제90조(포상) ①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 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1조(학생자치기구) ① 학풍을 새롭게 하고 학생자치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충남대학교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학생회의 구성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 기타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2조(학생지도) 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2009. 7. 1>

제93조(간행물) ① 학과(부) 및 대학의 학생회 등에서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당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

② 제1항 이외의 학생단체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4조(금지행위)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 행위와 기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95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1.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 수업(시험) 또는 연구수행을 방해한 자
3. 교내·외에서 폭력 또는 폭언 등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자
4. 고의로 학교시설물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로 반출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건물에 침입하거나 학교 건물을 점거한 자
6. 기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② 삭제 <2019. 9. 10>

③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④ 삭제 <2019. 9. 10>

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자체평가

제96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년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10]

제8장 학칙개정

제97조(학칙의 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개정안을 발의 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10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제96조에서 이동 <2019. 9. 10>]

제97조의2(제 규정의 개폐) 총장은 학칙 시행을 위한 제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7일 이상 예고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등 제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칙 등 상위 법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의 경미한 개정
2.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본조신설 2009. 2. 23]

[제96조의2에서 이동 <2019. 9. 10>]

제9장 보칙

제98조(위임사항)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7조에서 이동 <2019. 9. 10>]

부칙 <제1970호, 2020. 9. 8>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과대학 유급·제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입학자 및 2021학년도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편입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산학연구본부, 산학연구본부장, 백마사회공헌센터, 백마사회공헌센터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연구처, 연구처장, 사회공헌센터, 사회공헌센터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